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안번호

95-7

제출년월일 : 1995. 2. 24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21세기의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세계질서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문제를 심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화추진 협의회를 설치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협의회는 세계화를 위한 장기비전과 목표설정 세계화추진전략 및 과제의 도출과 세부추진방안의 수립, 부문별, 부처별 세계화추진 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상황의 점검, 평가, 세계화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하도록 함(안 제 2조)
- 나.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구성하도록하되 회장과 위원은 세계화 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안 제 3조)
- 다. 협의회는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둠(안 제 6조)
- 라. 협의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2조)

3. 관계법령

-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4,504호)
- 부처별 세계화 추진기획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총리훈령 제 309호)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1조(목적) 세계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세계화 정책과제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세계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세계화를 위한 장기비전과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2. 세계화 추진전략 및 과제의 도출과 세부추진방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부서별 세계화 추진계획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4. 부문별, 부서별 세계화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세계화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방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1인과 부회장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세계화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실무위원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간 사)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구청장은 협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등)①협회는 협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등 개최)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등)협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부산광역시사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